예 산 총 칙

제 1 조 (총칙)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영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의 추정손익계산서,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 현금흐름표는 다음과 같다.

가. 추정손익계산서

차 변		대 변	
비 용	순이익	수 익	순손실
17,612,272천원	0천원	11,042,688천원	6,569,584천원

나. 추정재무상태표

차 변	대 변	
자 산	부 채	자 본
213,706,661천원	113,139,744천원	100,566,917천원

다. 추정현금흐름표(자금계획서)

과 목	금 액
Ⅰ.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	3,445,164천원
Ⅱ.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	(5,163,387)천원
Ⅲ.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	(1,733,257)천원
Ⅳ. 현금의 증감(Ⅰ+Ⅱ+Ⅲ)	(3,451,480)천원
Ⅴ. 기초의 현금	6,635,997천원
Ⅵ. 기말의 현금	3,184,517천원

제 2 조 (업무의 예정량) 업무의 예정량은 다음과 같다.

가. 부 과 전 수 : 20,556전 나. 연간총하수발생량 : 13,429천㎥

다. 1일평균하수발생량 : 36.8천㎥

제 3 조 (수익적수입 및 지출) 수익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수 입		지 출	
제 1 관 하수도사업수익	11,042,688천원	제 1 관 하수도사업비용	17,612,272천원
제 1 항 영 업 수 익	2,727,753 〃	제 1 항 영 업 비 용	17,562,272 〃
제 2 항 영 업 외 수 익	8,314,935 〃	제 2 항 영 업 외 비 용	0 〃
제 3 항 특 별 이 익	0 〃	제 3 항 예 비 비	50,000 〃

제 4 조 (자본적수입 및 지출) 자본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 자본적수입액이 자본적지출액에 대하여 남는금액 6,569,584천원은 하수도사업수익부족액 6,569,584천원 보전하는 것으로 한다.

수 입		지 출	
제 1 관 자본적수입	14,357,312천원	제 1 관 자본적지출	7,787,728천원
제 1 항 고정자산매각수입	0 〃	제 1 항 유형자산취득	6,244,000 〃
제 2 항 비유동부채수입	0 〃	제 2 항 비유동부채상환금	0 〃
제 3 항 자본잉여금수입	11,852,980 〃	제 3 항 기타자본적지출	1,207,395 〃
제 4 항 유 보 자 금	2,504,332 〃	제 4 항 예 비 비	336,333 〃

제 5 조 (계속비) 계속비의 총액과 연할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관	항	사 업 명	총 액	년 도	연 할 액
		해 당	없 음		

제 6 조(채무부담행위)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과 기간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사 항	기 간	한 도 액
	해 당 없 음	

제 7 조 (지방채) 공기업채 발행을 위한 기채의 목적, 한도액, 기채의 방법,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기 채 목 적	한 도 액	기 채 방 법	이 자 율	상 환 방 법
	해 당	없 음		

제 8 조 (일시차입금)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762,000천원으로 정한다.

제 9 조 (예산전용 금지과목) 다음에 게기하는 과목의 경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다.

(1) 인 건 비 : 1,820,404천원 (2) 업무추진비(타 비목으로부터의 전용금지) : 8,340천원

제 10 조 (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) 하수도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 및 타 회계로부터 이 공기업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19,496,915천원이다.

제 11 조 (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) 이익잉여금 없음

제 12 조 (중요자산취득 및 처분)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종 류	명 칭	수 량	금 액
		해 당 없 음		

제 13 조 (회전기금) 회전기금의 한도액 해당없음

2018. 03. .

영 주 시 장